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17828

제출연월일 : 2015. 11. 20.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장애인이 장애인 등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등에 장애인등록증의 반환을 명령한 후 그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장애인 등록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먼저 장애인 등록을 취소한 후 장애인등록증의 반환을 명령하고 그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바꾸고, 장애수당의 대상자격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 등을 제한하는 대상의 범위를 성범죄자 외에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살인의 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으로 확대하고, 특별시장 등이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 등록 취소(안 제32조, 안 제32조의3 신설)

1) 현재는 장애인이 장애인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 취소 없이 장애인등록증 반환 명령과 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만을 규정하고 있음.

2)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사람이 장애인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 반환을 명령하기 전에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나. 장애수당 신청인의 장애 정도 심사(안 제4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현재 장애수당은 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달리 장애 정도를 심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다.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 등 제한 대상 확대(안 제59조의3)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 등을 제한하는 대상을 현재 성범죄자 외에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살인, 상해, 유기 등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포함하도록 함.

라.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안 제59조의11 신설)

1) 장애인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 대한 사후보호체계가 부족하여 장애인학대 사건 발생 이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장애인복지시

설에 수용되거나 방치되는 문제가 있음.

2) 특별시장 등은 장애인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피해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법률 제 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제86조의 죄(제3항제1호 및 제4항제1호의 죄는 제외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3.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4.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부터 262조까지의 죄
5.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부터 제275조까지의 죄
6.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부터 제278조까지, 제280조 및 제281조의 죄
7.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 제284조 및 제286조의 죄

8.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9.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

10.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 제309조 및 제311조의 죄

11.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19조부터 제321조까지의 죄

12.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3조, 제324조 및 제324조의5(제323조 및 제324조의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13. 「형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부터 제339조까지 및 제342조(제333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14.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 및 제352조(제350조의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15. 「형법」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의 죄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제32조제1항 중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

자”를 “장애인과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등록증의 교부와 반환”을 “등록증의 발급”으로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과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2조의3을 제32조의4로 하고, 제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사람(제3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사람과 법정대리인등에게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제32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등록의 취소, 등록증의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대상·기준 및 방법”을 “대상·기준·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심사 대상·절차·방법”으로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장애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제3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심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59조의2제1항 중 “장애인 대상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장애인 대상 성범죄(제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59조의3의 제목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을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중 “성범죄”를 각각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성범죄로”를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성범죄”를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성범죄경력”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으로 한다.

제59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11(피해장애인 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피해장애인 쉼터(이하 “장애인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장애인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4제3항 중 “시설운영자”를 “시설 운영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

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에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3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의 취소

제84조제1항 중 “장애인,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는”을 “장애인과 법정대리인등은”으로 한다.

제90조제2항 중 “성범죄 경력”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2조의3제2항에 따른 등록증 반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등록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등록증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수당 지급을 위한 장애 정도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0조의2에 따라 장애수당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아닌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범죄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 ③ (생 략) <신 설>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제86조의 죄(제3항제1호 및 제4항제1호의 죄는 제외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3.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4.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부터 262조까지의 죄 5.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부터 제275조까지의 죄 6.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

	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부터 제278조까지, 제280조 및 제281조의 죄 7.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 제284조 및 제286조의 죄 8.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9.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 10.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 제309조 및 제311조의 죄 11.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19조부터 제321조까지의 죄 12.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3조, 제324조 및 제324조의5(제323조 및 제324조의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13. 「형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부터 제339조까지 및 제342조(제333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14.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 및 제352조(제350조의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15. 「형법」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의 죄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과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해당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하면 그 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삭 제>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과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교부와 반환,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등록증의 발급----------.

<신 설>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사람(제3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사람과 법정대리인등에게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제32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등록의 취소, 등록증의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3 (생 략)	제32조의4 (현행 제32조의3과 같음)
제49조(장애수당) ①·② (생 략)	제49조(장애수당)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장애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신 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제3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심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의 지급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 대상·기준·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심사 대상·절차·방법 ----------.
제50조의2(자녀교육비 및 장애수	제50조의2(자녀교육비 및 장애수

당 등의 지급 신청) ① (생 략)	당 등의 지급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 신청인과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9조의2(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① 누구든지 장애인 대상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제59조의2(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① ------ 장애인 대상 성범죄(제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①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제59조의3(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 등) ① 장애인학대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련범죄(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9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③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는 그 시설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하였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으로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
<신 설>	제59조의11(피해장애인 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는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피해장애인 쉼터(이하 “장애인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장애인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4(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①·② (생 략)	제60조의4(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설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설 운영자----------. ④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에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①·② (생 략)	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3조의2(청문)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제83조의2(청문) ---------- ---------- ---------- ----------. 1.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의 취소
1. ~ 3. (생 략)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제84조(심사청구) ① 장애인,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는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장애인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84조(심사청구) ① 장애인과 법정대리인등은 ---------- ---------- ----------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90조(과태료) ① (생 략)	제9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가 제5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② ---------- ---------- ---------- ---------- ---------- ----------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 ----------.
1. 제32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 반환 명령을 거부한 자	1. 제32조의3제2항에 따른 등록증 반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지출	1안) 거주시설 위탁운영 (8개소)	○ 중앙정부	360	371	382	393	405	1,911
		○ 지방자치단체	360	371	382	393	405	1,911
		소 계(a)	720	742	764	786	810	3,822
	2안) 거주시설 위탁운영 (8개소)	○ 중앙정부	720	742	764	787	810	3,823
		○ 지방자치단체	720	742	764	787	810	3,823
		소 계(a)	1,440	1,484	1,528	1,574	1,620	7,646
	3안) 신축 8개소 운영	○ 중앙정부	3,732	966	995	1,025	1,056	7,774
		○ 지방자치단체	3,732	966	995	1,025	1,056	7,774
		소 계(a)	7,464	1,932	1,990	2,050	2,112	15,548
	4안) 신축 16개소 운영	○ 중앙정부	7,466	1,934	1,992	2,052	2,114	15,558
		○ 지방자치단체	7,466	1,934	1,992	2,052	2,114	15,558
		소 계(a)	14,932	3,868	3,984	4,104	4,228	31,116
수입	○		‘ 해	당	사	항	없	음 ‘
	○							
	소 계(b)							
총 비용(a-b)								

Ⅱ. 재정수반요인 : 시·도에 학대 피해 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지원을 위한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제59조의8 관련)

Ⅲ. 비용추계의 전제 : 운영방식 및 설치 개소수에 따라 4가지 안으로 작성함.

- 위탁운영 : 1안) 8개소 / 2안) 16개소
- 신축 설치 후 운영 : 3안) 8개소 / 4안) 16개소

Ⅳ.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별도붙임

Ⅴ.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Ⅵ. 작성자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김웅년사무관, 유효영주무관(044-202-3301 / 3302)

참고자료 **장애인 쉼터 추진안별 소요비용**

< 추진안별 소요비용 산출내역>

구분			소요비용	소계	비고
1안	거주시설 위탁운영(8개소)		90백만원 x 8개소 x 50% = 360백만원	**360백만원**	2016년 운영예정
2안	거주시설 위탁운영(16개소)		90백만원 x 16개소 x 50% = 720백만원	**720백만원**	
3안	신축 8개소 운영	기능보강 (신축)	1,397천원* x 500㎡ x 8개소 x 50% = 2,794백만원	**3,732백만원**	
		운영비	○ 운영비 : 606백만원 + 332백만원 = 938백만원 - 인건비 : 606백만원 **급여)** 32,271천원** x 4명 x 8개소 x 50% = 516백만원 **사회보험부담금)** 516백만원 x 9.2% = 47백만원 **퇴직적립금)** 516백만원 x 1/12 = 43백만원 - 사업운영비 : 83백만원*** x 8개소 x 50% = 332백만원		
4안	신축 16개소 운영	기능보강 (신축)	1,397천원 x 500㎡ x 16개소 x 50% = 5,588백만원	**7,466백만원**	
		운영지원	○ 운영비 : 1,214백만원 + 664백만원 = 1,878백만원 - 인건비 : 1,214백만원 **급여)** 32,271천원 x 4명 x 16개소 x 50% = 1,033백만원 **사회보험부담금)** 1,033백만원 x 9.2% = 95백만원 **퇴직적립금)** 1,033백만원 x 1/12 = 86백만원 - 사업운영비 : 83백만원 x 16개소 x 50% = 664백만원		

* 2016년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신축 단가.
** 2015년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7호봉 기본급 권고 기준, 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포함함
- 산출내역 : (2,263천원(7호봉 기본급 1~4급 평균금액) **x 12월) + 2,715천원(명절휴가비) + 2,400천원(시간외근무수당) = 32,271천원**
*** 2016년도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비 단가.

< 추진안별 연도별 재정소요 >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소계	총계
세출 재원조치	1안	거주시설 위탁운영(8개소)		720	742	764	786	810	3,823	3,822
	2안	거주시설 위탁운영(16개소)		1,440	1,484	1,528	1,574	1,620	7,644	7,646
	3안	신축 8개소 운영		7,464	1,932	1,990	2,050	2,112	15,548	15,548
	4안	신축 16개소 운영		14,932	3,868	3,984	4,104	4,228	31,116	31,116
중앙정부 일반회계	1안	거주시설 위탁운영(8개소)		360	371	382	393	405	1,911	1,911
	2안	거주시설 위탁운영(16개소)		720	742	764	787	810	3,823	3,823
	3안	신축 8개소 운영	기능보강(신축)	2,794	-	-	-		2,794	7,774
			운영비	938	966	995	1,025	1,056	4,980	
	4안	신축 16개소 운영	기능보강(신축)	5,588	-	-	-	-	5,588	15,558
			운영지원	1,878	1,934	1,992	2,052	2,114	9,970	
지방자치단체	1안	거주시설 위탁운영(8개소)		360	371	382	393	405	1,911	1,911
	2안	거주시설 위탁운영(16개소)		720	742	764	787	810	3,823	3,823
	3안	신축 8개소 운영	기능보강(신축)	2,794	-	-	-		2,794	7,774
			운영비	938	966	995	1,025	1,056	4,980	
	4안	신축 16개소 운영	기능보강(신축)	5,588	-	-	-	-	5,588	15,558
			운영지원	1,878	1,934	1,992	2,052	2,114	9,970	

* 물가, 급여 인상분 3% 증액 반영함.